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
직제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확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17. ~ 12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80”을 “8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7”을 “78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74”를 “7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0</u>	<u>8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77</u>	<u>78</u>	+1
•	•	•	•
3급 또는 4급 이하	<u>74</u>	<u>75</u>	+1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3